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  
[재경본부]







**Part1.**  
CP의 개요

<b>1. CP란</b>	<b>05</b>
1.1 의의	06
1.2 CP 필요성	06
1.3 CP 핵심요소	07



**Part2.**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b>1.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b>	<b>10</b>
<b>2. 공정거래와 기아의 의무</b>	<b>1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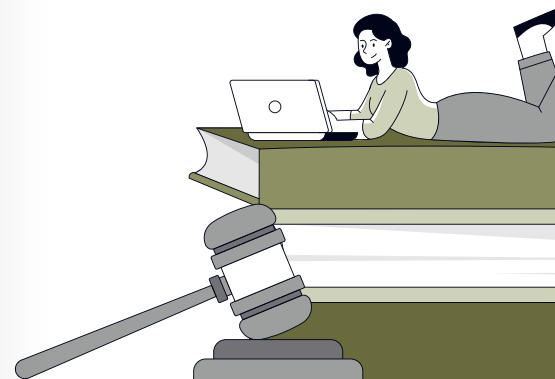
**Part3.**  
재경 직무 관련 주요 법률

<b>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b>	<b>13</b>
1.1 개요	13
1.1.1 목적	13
1.1.2 적용대상	13
1.1.3 법률의 구성	14
<b>1.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 제45조)</b>	<b>14</b>
1.2.1 불공정거래행위	14
1.2.2 유형	14
1.2.3 법 위반시 제재	19
1.2.4 DO&DON'T	20
1.2.5 Q&A	21



**Part3.**  
재경 직무 관련 주요 법률

<b>1.3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b>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법 제47조)	<b>22</b>
1.3.1 부당지원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9호)	22
1.3.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법 제47조)	24
1.3.3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구분	25
1.3.4 DO&DON'T	26
1.3.5 Q&A	27
<b>1.4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b> (법 제40조)	<b>28</b>
1.4.1 부당공동행위(담합, 카르텔)	28
1.4.2 위반시 제재	30
1.4.3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30
1.4.4 DO&DON'T	31
1.4.5 Q&A	32
<b>1.5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26조)</b>	<b>32</b>
<b>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b>	<b>34</b>
2.1 하도급거래 대금지급(법 제13조)	34



##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란?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는 기아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와 연관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지침서(편람, Guide-Book)입니다. 임직원들은 자율준수 가이드를 참고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요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Check List', 'Q&A' 등을 통하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는 구성원들의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대표 공정거래 관련 법령 6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기아 글로벌 브랜드사이트와 준법경영지원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본 요약 가이드북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가이드 내용 중 재경본부 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경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 주요 공정거래 법규를 설명하고, 'Do & Don't'를 제공하여 본부 임직원들이 업무 진행시 참고할 사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약 가이드북에서 다루지 않은 공정거래 법규도 필히 준수해야 하는 점 당부 드리고, 가이드 내용이나 공정거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투명경영 지원팀 및 법무실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 CP의 개요

Part

1

CP란

- 1.1 의의
- 1.2 CP 필요성
- 1.3 CP 핵심요소

## Part1

# CP의 개요

## 1. CP란

### 1.1 의의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통제시스템으로서,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 규범을 마련하는 것

### 1.2 CP 필요성

- ①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 공정거래자율준수 노력 → 경쟁력 강화 → 지속적인 발전
- ② **법 위반에 따른 막대한 손실 사전 예방**  
- 법 위반 행위 적발시,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함  
-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 부담함
- ③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 CP도입을 공표하고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음

### ④ CP 운영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CP 운영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내용이 포함된 개정 공정거래법 및 이에 따른 개정 시행령,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 24.6.21부터 시행
- 시정조치, 과징금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적 처분 감경 및 직권조사 면제

CP 등급	과징금 감경 <sup>1)</sup>	시정조치 감경 <sup>1)</sup>		직권조사 면제 <sup>3)</sup> (부당지원 제외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조사 면제)
		간행물	사업장	
AAA	15% <sup>2)</sup> 이내 감경	2단계 하향조정		2년
AA	10% <sup>2)</sup> 이내 감경	공표기간 단축		1년 6개월
A	-	1단계 하향조정		1년

- 1) 적용제외: ① CP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②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③ 담합(가격, 입찰 등), ④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의 고위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2) 조사개시 전에 범위반을 탐지하여 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한 경우 5%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  
3) 적용제외: ① 최근 2년간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② 위 관련 법규 위반 신고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③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3 CP 핵심요소

#### ①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엄격한 준수가 경영정책의 중요한 요소임을 행동강령이나 준수정책을 통해 공식적 문서로써 조직 내·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 되어야 함

#### ② 최고 경영진의 지원

- 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충분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조직 규모에 적합한 인적·물적 자원이 제공되는 등 최고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 ③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CP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최고 경영자가 아닌 임원을 CP 운영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함

- ④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지침서로서 활용 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야 하고,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배포하여야 함
- ⑤ **교육훈련프로그램**  
- 자율준수 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저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최고경영자 및 임원(자율준수관리자 포함), 그리고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에게는 보다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⑥ **사전 감시체계**  
- CP의 핵심은 법 위반 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있으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하고, 법 위반 발생시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최고경영진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⑦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 법 위반 행위를 기업 스스로가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와 법 자율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마련해야 함
- ⑧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 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CP 운영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III. 참조



#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Part

2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공정거래와 기아의 의무

#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

## 1.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 2. 공정거래와 기아의 의무

### 기아 사업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구분	소관법령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등
협력사 상생	하도급법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반품금지 등 원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 발주자 의무사항 등
대리점	대리점법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금지, 분쟁 조정 등
오토큐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등록, 허위정보제공 금지 등 가맹본부 의무 및 금지사항 등
소비자, 광고, 마케팅 등	표시광고법	부당표시광고 금지, 광고실증제, 중요정보고시 등
	약관규제법	불공정약관 금지, 표준약관, 약관의 설명 고지의무 등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권리,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원(분쟁조정), 소비자 단체 등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소비자권익의 보호 등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상기 공정  
거래위원회 소관법령 및 모든 관련 법령을 따를 것임

# 재경 직무 관련 주요 법률

## Part 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 1.1 개요
- 1.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 제45조)
- 1.3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법 제47조)
- 1.4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법 제40조)
- 1.5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26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 2.1 하도급거래 대금지급(법 제13조)

## Part3

# 재경 직무 관련 주요 법률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 1.1 개요

#### 1.1.1 목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1.1.2 적용대상

- ①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을 행하는 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조합 등 여러 가지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적 형태는 문제되지 않음
- ② 사업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과 관련된 각종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함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 포함됨



### 1.1.3 법률의 구성

- ①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③ 부당공동행위의 금지
- ④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 ⑤ 기업결합의 제한
- ⑥ 경제력 집중의 억제
- ⑦ 그 밖의 규정

## 1.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 제45조)

### 1.2.1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란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함

### 1.2.2 유형

#### 1) 거래거절(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①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함

##### ② 단독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함

##### ③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예시

-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단독 거래거절)

## 2) 차별적 취급(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① 가격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함

### ② 거래조건 차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결제 조건과 같은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의미함

- “거래조건”이란 가격 또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수량할인 등)을 제외한 계약이행방법, 대금결제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의미함

### ③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 목적은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됨

### ④ 집단적 차별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 차별 주체 간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 가능하고, 차별 주체 간의 경쟁 관계가 없어도 성립 가능함

### 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예시

-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행위(가격차별)를 의미함

-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의 상품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거래조건 차별)를 의미함

-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 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3) 경쟁사업자 배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① 부당염매

-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저가로 공급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저가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
- 계속적 염매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위법하지 않을 수 있음

- 진입장벽이 없어 염매로 경쟁자가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대두 가능한 경우
- 하자품, 유통기한 임박, 계절상품, 재고처리를 위해 제한된 물량 내에서 염매하는 경우
-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은 경우
- 신규시장진입에 필요한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염매하는 경우
- 파산, 지급불능 방지 또는 그러한 상태의 사업자가 염매하는 경우
- 효율성 증대효과, 소비자 후생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일시적 염매의 경우 염매의 동기 및 시장집중도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

#### ② 부당고가매입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고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함
- 통상거래가격이라 함은 시장에서 사업자 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수준을 말함

#### ③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

-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함으로써 사실상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부당고가매입)

### 4) 부당한 고객유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 ①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함

- “이익”은 ① 리베이트의 제공, 가격할인 등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 조건의 설정·변경,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자사제품으로 교환하면서 덤으로 자사제품의 과다한 제공 등 적극적 이익제공과, ②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비용의 감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 소극적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함

#### ②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이 오인하게 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함

#### ③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방해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함

#### ④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

-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추천하는 자에게 리베이트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5) 거래강제(법 제45조 제1항 제5호)

#### ① 끼워팔기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함

#### ② 사원판매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함

#### ③ 기타의 거래강제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함

## 6) 거래상 지위 남용(법 제45조 제1항 제6호)

### ①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함

### ② 이익제공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함

### ③ 판매목표 강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함

### ④ 불이익 제공

-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함

### ⑤ 경영간섭

-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하는 경우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의미함

## 7) 구속조건부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

### ① 배타조건부거래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함

### ②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함

## 8) 사업활동방해(법 제45조 제1항 제8호)

### ① 기술의 부당이용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② 인력의 부당유인, 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③ 거래처 이전 방해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④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 위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1.2.3 법 위반시 제재

### ① 시정조치(법 제49조)

- 당해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② 과징금(법 제50조 제1항)

- 관련매출액의 4% 이내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 곤란 시 10억 원 이내

### ③ 형사처벌(법 제125조 제4호, 법 제128조, 법 제129조)

-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인, 개인 양벌규정

### ④ 손해배상책임(법 제109조)

- 사업자가 고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야 면책됨

### ⑤ 금지청구(법 제10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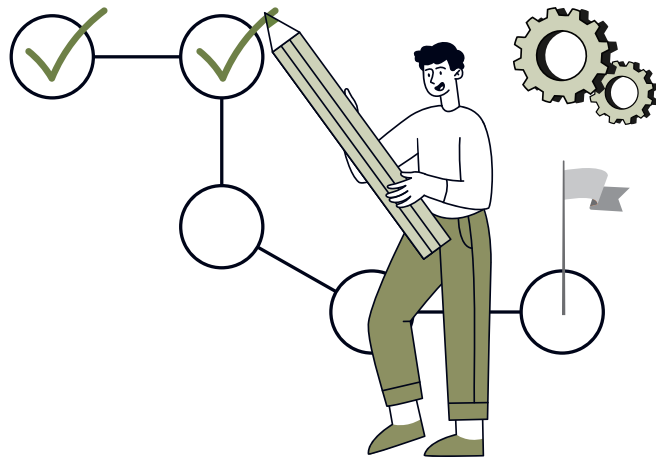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등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 1.2.4 DO&amp;DON'T

## DO

- 거래 종료 또는 해지 시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사전에 법무부서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 거래조건 변경 시에는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그 증빙을 남겨 둔다.
- 가격 및 공급량 산정의 근거(예: 원가 변동, 생산능력, 재고량 등)를 갖추어 둔다.
- 경쟁사업자와의 비교(제품기능, 기술 등)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결합판매 시에는 합리적인 사유(ex. 주된 상품의 기능 발휘, 효용 극대화, 할인판매 등)가 있는지 살펴본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대리점을 포함한 거래상대방은 회사의 하위 기관이나 부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자임을 인식한다.
- 배타조건부거래 시에는 당해 상품의 특성, 비용 절감 등 합리적 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DON'T

- 상대방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또는 계약상 근거가 없음에도 계약기간 중 거래를 종료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안 된다.
- 개별 사정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별로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을 지양한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시장 선점이나 매출확대 등을 위해 프로모션 진행 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지양한다.
-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지 않는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구제품, 재고품이나 비인기상품을 인기상품과 묶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지양한다.
- 거래상대방의 판매목표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계약체결 시 자기의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 채용공고 외에 경쟁사업자의 인력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여 해당 인력 다수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스카우트하는 것을 지양한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참조).

## 1.2.5 Q&amp;A

**Q.**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의 성립요건이 무엇인가요?

**A.**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거래조건 또는 거래내용에 관한 현저한 차별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2) 이러한 행위가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할 목적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3) 해당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7.2.15. 선고 2015누44280 판결).

**Q.**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 특정 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별 행위의 동기, 그 효과의 귀속 주체, 거래의 관행, 당시 계열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4두14052 판결).

### 1.3 부당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법 제47조)

#### 1.3.1 부당지원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9호)

##### 1) 유형

- ①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함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동일 또는 유사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간 형성되었을 가격)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 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 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원객체와의 거래에 고유한 특성에 의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 해당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②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거래하면서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통행세 거래")를 의미함
- 통행세 거래로 인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기로 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필요 최소한의 분석·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 불필요한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지원주체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방식인지 여부
- 지원주체가 거래상 역할이 미미한 지원객체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함으로써 지원객체에게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지원객체를 거쳐서 거래하는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3.2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법 제47조)

1) 적용대상

① 제공주체

-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

② 제공객체

-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2) 유형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과 현금 기타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함

② 사업 기회의 제공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함

③ 합리적 고려나 비교가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 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의미함

1.3.3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구분

구분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관련규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공정거래법 제47조
지원주체	사업자 일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원객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회사 (지원주체와의 특수관계, 계열회사 요건 불요)	①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②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규제목적	공정거래 저해성 (특히 경쟁제한성)이 있는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금지
규제내용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 (일감 몰아주기) ② 통행세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 ② 사업기회의 제공 ③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몰아주기)



## 1.3.4 DO&amp;DON'T

## DO

- 모든 거래는 가급적 입찰 또는 비교견적방식을 통해 진행한다.
- 계열사와의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합리적인 사유(ex. 독보적인 기술력 등)를 구비한다.
- 계열사 간 거래조건은 비계열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가 있다면 해당 거래와 유사하게, 없다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수준과 유사하게 정하도록 한다(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조).
-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에 있어 계열사간 계약조건과 비계열사와의 계약조건을 수시로 점검한다.
- 시장에서의 유사 사례 등이 없어 거래대가 산정이 어려운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는다.
- 계열사간 임직원 겸직이 필요한 경우 겸직 인력이 제공하는 업무에 비례하여 또는 매출액에 안분하여 인건비를 분담한다.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매개가 있기 전과 후의 거래관계에 변동(매개가 있기 전에 비해 매개가 있는 후 불리, 불이익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중간 매개자인 계열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참조).

## DON'T

-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계열사에게 금전을 대여하거나 계열사의 대출에 담보 없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 대가 수령 없이 계열사의 경영이나 인프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대행하지 않는다.
- 계열사를 거쳐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지양하고, 계열사에게 역할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의 거래상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1.3.5 Q&amp;A

**Q. 계열회사와의 수의계약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나요?**

- A.** 계열회사와의 수의계약만으로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나, 1) 수의계약에 따라 지원객체에 대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2) 해당 지원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부당성)이 있을 경우 부당지원으로 판단 가능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Q&A).

**Q. 모든 계열회사와의 거래에는 무조건 부당지원행위의 리스크가 있는 것 인가요?**

- A.**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①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② 지원행위로 인해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IV. 부당성 판단기준 1.가.).  
이와 같이 계열사와 행한 모든 행위가 일률적으로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양지하시고 업무 진행하시되 개별 사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당사의 사익편취 규제대상(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은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요?(‘24년 기준)**

- A.**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회사 및 그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가 당사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8월 기준 (주)서울피엠씨, 서림개발(주), 현대머티리얼(주), 현대엔터프라이즈(주), 현대커머셜(주), (주)서림환경기술, 현대첨단소재(주) 총 7개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관련하여,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기업집단 포털 내 사익편취 규제대상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집단포털에서 제공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현황은 직전연도 5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 시점 기준 사익편취 규제대상과 그 내용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수행시 실제 거래 시점 기준 규제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4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법 제40조)

### 1.4.1 부당공동행위(담합, 카르텔)

#### 1) 요건

복수의 사업자가 가격 등 거래의 조건에 관한 합의를 하고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함

##### ① 합의

- '합의'란 둘 이상의 사업자 간 각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기로 하는 의사의 연락을 의미함
- 사업자들간의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도 담합이 될 수 있음
-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합의'만으로 담합은 성립함
- 명시적 합의 외에 암묵적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도 포함됨
- 지키지 않을 마음으로 참여한, 소위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합의도 포함됨
- 제3자를 매개로 한 사업자들 간의 합의도 가능함
- 수요자들의 합의(구매담합)도 포함됨
-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담합'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도 포함됨
- '동조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그에 더하여 사업자들 간의 의사연락 증거가 있으면 합의가 성립

##### ② 경쟁제한성

-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함
- 경성담합(가격담합, 생산량 담합,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실무상 경쟁 제한효과가 명백한 경우로 인정됨
- 연성담합(공동마케팅,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연구개발, 공동표준개발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함

## 2) 유형

- ①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1호)
- ②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2호)
- ③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3호)
- ④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4호)
- ⑤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5호)
- ⑥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6호)
- ⑦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7호)
- ⑧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8호)
- 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9호)
  -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을 제한하는 행위, 자유로운 연구·기술개발을 제한하는 행위 등과 같이 제1호 내지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함
- ⑩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대금지급조건 등 정보교환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9호)
  - 우편, 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정보교환의 수단은 불문함
  -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도 포함됨



## 1.4.2 위반시 제재

- ① 시정조치(법 제42조)
- ② 과징금(법 제43조)
  - 관련매출액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 곤란 시 40억 원 이내
- ③ 형사처벌(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및 동조 제2항, 법 제128조, 법 제129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법인, 개인 양벌규정
- ④ 손해배상책임(법 제109조)
- ⑤ 기타
  - 입찰담합의 경우 발주기관에 법위반 사실 통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4. 참조

## 1.4.3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법 제44조)

- ①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을 감면함
  - 1순위: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 전부 면제
  - 2순위: 시정조치 감경 가능, 과징금 50% 감경, 고발 면제
- ② 진행중인 담합사건(A)의 조사과정에서 다른 담합사건(B)에 대해 1순위로 자진신고자에 대한감면조치를 적용할 경우 담합(A)에 대해 추가 감면이 가능함(Amnesty Plus)
- ③ 조사 과정에서의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관련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거나, 거짓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등에는 감면이 취소됨



## 1.4.4 DO&amp;DON'T

## DO

-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접촉할 경우 모임의 성격과 내용(예, 고객사 초청 모임, 민감한 가격 등 관련 정보 미공유된 사적 모임 등)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 경쟁사에게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의 정보에 대한 문의를 받은 경우 정보 제공을 거절하여야 한다.
- 경쟁사에 관한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 그 정보의 적법한 출처(예, 고객사, 협력업체/대리점 등)를 밝혀야 한다.
- 독자적으로 입찰대상 건에 관한 관련업계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다.
- 관련 법령 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거나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공동 수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 DON'T

- 경쟁사 임직원과의 공식, 비공식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불가피하게 경쟁사와 접촉할 경우 가격은 물론 가격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예, 재고량, 할인율, 기준가격 등)에 관한 논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경쟁사에게 상품의 개발, 판매 계획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 행정기관 또는 협회 등의 권유, 지시 등이 있더라도 경쟁사와 함께 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거나 가격 등 정보교환을 해서는 안 된다.
- 공동으로 입찰과 관련한 최저입찰가격 등을 결정하거나 이에 응하여서는 안 된다.
- 입찰가격을 협의하거나 그에 관한 정보의 교환·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 1.4.5 Q&A(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Q. 경쟁사 간 정보만 교환해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A.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을 합의에 따라 교환하였다면, 이와 같은 정보교환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평가받는 한 이러한 정보교환만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 참조

## 1.5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26조)

### 1) 적용대상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라고 하고, 이에 소속되는 회사들이 본 제도의 적용대상이 됨

### 2) 제도의 내용

① 의결 및 공시의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금액(단,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분기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거래행위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

③ 위반 시 제재

- 시정조치(법 제37조 제1항)

- 과태료: 법인 1억 원 이하, 개인 1천만원 이하(법 제130조 제1항 제4호)

### 3) Q&A

#### Q. 계열회사와 100억 이상의 거래는 모두 '대규모 내부거래'인가요?

A. 주요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 '국내' 계열회사(총 71개사, '24.08.06 기준)와의 100억 이상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100억 이상의 '상품·용역' 거래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발행주식 20% 이상을 소유한 계열회사 및 그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총 7개사, ㈜서울피엠씨, 서림개발㈜, 현대머티리얼㈜, 현대엔터프라이즈㈜, 현대커머셜㈜, ㈜서림환경기술, 현대첨단소재㈜)와의 거래만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합니다.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업무 매뉴얼 참조

※ 실제 거래 시점 기준 규제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와의 거래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있나요?

A. 계열 편입 후 해당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주요내용(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계약체결방식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에 해당합니다.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업무 매뉴얼 참조

#### Q. 계열 편입 유예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있나요?

A. 계열 편입 유예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에 해당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현시점('24.08)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편입 유예사에 해당하는 기업은 포티투닷, 에어플러그, 모비아, 유비퍼스트대원, 디퍼플, 스튜디오레논, 스튜디오벨루카, 더퍼스트 게이트, 알티올, 디플랜360, 배곧대교 총 11개사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시 실제 거래 시점 기준 규제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 2.1 하도급거래의 대금지급(법 제13조)

#### 1) 개념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는 자)가 수급사업자(위탁 받은 제조·수리·시공·용역을 수행하여 납품·인도·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용역을 수행하여 납품·인도·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함

#### 2) 적용대상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의 위탁을 한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의미함

-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000억 원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인 기업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할 수 있음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을 받은 경우 위 ①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음

③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2조 원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및 보복조치에 있어서는 수급사업자로 간주함

#### 3)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① 지급기일 준수

-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② 지연이자 지급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해야 함. 예를 들어, 목적물을 수령하고 90일째 되는 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30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③ 어음할인료 지급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7.5%)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에 30일이 만기인 어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30일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함

④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지급

-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대금 지급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을 말함. 특히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 해당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 수수료율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사전에 체결한 수수료율을 적용함

#### 4) Q&A

**Q.** 당사와 중소/중견기업과의 제조위탁 거래는 모두 하도급 거래에 해당되어 60일 이내 대금 지급을 해야 하나요?

**A.** 하도급법은 제조위탁을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조 제6항). 당사가 중소/중견기업인 부품사, 통합 구매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는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하도급 대금이 압류된 경우 대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하도급대금이 압류(가압류)되더라도 당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원칙적으로 미지급 중인 대금을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Kia Corporation

Copyright © 2023 Kia Corp. All rights reserved.